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23 선고 2021가단4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 배대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진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성 담당변호사 장영근, 나성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홍원석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는 50,158,41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18,510,2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물류회사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 등(이하 ‘이 사건 금전 등’)을 제공하였다.

순번	일시	제공 상대방	금액
1	2017. 9.경	피고 C	150만 원
2	2017.11.22.		그랜저 차량 1대 3,800만 원 상당
3	2017. 11.경 ~ 2020. 2. 5.경		10,658,410
4	2020. 3. 20.	피고들	2,549,410원
5	2020. 4. 20.		30만 원
6	2020. 5. 20.		400만 원
7	2020. 6. 22.		300만 원
8	2020. 6. 26.		5,659,850원
9	2020. 7. 20.		100만 원
10	2020. 10. 21.		2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거래처를 확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C는 50,158,41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18,510,26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 C는 물류회사로부터 오더를 수주하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합계 68,668,67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2)

피고들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하는 영업을 하고 급여 월 500만 원씩과 성공사례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영업활동 등을 위해 이 사건 금전 등을 제공받은 것이지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 C는 위 약정에 따른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거래처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에 물류계약을 수주하는 업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나아가 살피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1) 2024. 3. 4. 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을 이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